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권,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 300미터 지정은 헌법위반이다

1. 대통령 경호처가 2022. 8. 22.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300미터로 확장해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언론은 커터 칼로 비서관을 협박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부각하였고, 여야 합심하여 ‘협치와 통합, 상생’ 등의 미사여구를 붙이며 위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였으니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평할 만하다.
2.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로부터의 경호구역 300미터 확장조치의 결과, 기존에 위 구역 내에서 신고하는 집회는 모두 차단되었다. 양산경찰서가 집회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하더라도 집회참석자라고 판단되면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내고, 확장장치를 검문, 검색하여 집회용품 반입을 차단하고, 집회 발언을 하면 곧바로 경호구역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는 등 불법이 횡행하며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위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의원이 대통령실에 제안한대로 ‘경호구역 확대지정으로 문재인 집 인근의 집회를 막을 수 있다’는 초헌법적 발상 그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 관저, (현직)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법률을 수단으로 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위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명문의 규정조차 없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나 시위에 관한 금지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
4. 경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예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차례 존재하는데, G20 정상회담경호구역지정등에관한법률이 바로 그것이며, 위 법률조차도 집회금지의 장소적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최소성’을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경호구역은 장소적, 시간적 제한을 전혀 두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경호권한이라는 의무에 근거하여 경호구역 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이 아닌 ‘경호구역 지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집회에 대한 직접금지를 행

정처분의 기본적인 형식도 갖추지 않고 경호행위라는 사실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며, 강제적인 인치까지도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호인력은 가히 독재자의 친위대나 군주의 근위대를 방불케 한다.

6. ‘경호 목적’을 내세운다고 해서 ‘법률’이 아닌 ‘사실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경호구역 확대지정이 정당한 것이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 모두를 참탈하고 헌법재판소의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또한 경호구역 지정이라는 사실행위에 비추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 실 앞에서의 집회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경호구역 지정으로 해결하면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초법적 발상을 법원과 검찰이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7.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에도 누리지 못한 ‘300미터의 경호를 받을 특권’, ‘대통령에게 반대의 집회를 차단할 수 있는 특권’이 오직 문재인이라는 전직 대통령에게만 창설되었다. 이에 모든 국가기관이 조력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사태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즉각 경호구역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3. 4.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재원